

국회헌법개정위원회 제4차 회의 1988.12.12.

15. 後天性免疫缺乏症豫防法中改正法律案(朴英淑·金忠兆·宋斗灝·朴炳善議員外 162人 發議)

(14時45分)

○委員長 辛相佑 다음은 議事日程 第15項 後天性免疫缺乏症豫防法中改正法律案을 上程합니다.

提案者이신 朴英淑議員께서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英淑議員 존경하는 委員長 그리고 委員 여러분!

이 後天性免疫缺乏症豫防法改正에 관해서는 지난 臨時國會와 國政監査때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또 討論에도 우리 委員들께서 다 참석을 하셨습니다. 때문에 내용은 주지하고 있는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심각성이 지난 11月1日 UN이 AIDS날로 정한 것으로서도 짐작이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다 내용을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文件으로 내용은 提案說明을 速記錄에 記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우리 專門委員께서 내놓으신 提案理由와 主要骨子 그 分析하신 것에 의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提案理由는

첫째 現行法の 問題點을 보면 後天性免疫缺乏症의 第1次 感染經路인 駐韓美軍등 外國人에 대해 檢診條項등 적절한 措置가 빠진 채 그 被害者라 할 수 있는 特殊職種 從事者와 感染者로 判定된 사람들의 隔離措置에만 重點을 두고 있습니다.

둘째 현재 國內의 感染者가 海外에서 入國하는 內國人에 의하여 상당수가 發生하고 있음에도 外航船員을 제외한 海外入國 內國人에 대한 檢診條項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셋째 感染者로 判定되면 強制隔離收容 就業制限 등 不利益處分을 받을 수 있음에도 그 判定의 方法과 內容이 明確하게 規定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째 感染者로 判定되면 많은 不利益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感染者의 決定은 신중하게 判斷되어야 함에도 行政擔當者의 判斷에 의해서만 執行되도록 規定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現行法の 問題點을 개선하여 國民保健을 威脅하는 後天性免疫缺乏症으로부터 國民健康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後天性免疫缺乏

症의 豫防을 위해 後天性免疫缺乏症豫防法을 改正하고자 합니다.

主要骨子は

첫째 後天性免疫缺乏症이하 AIDS라고 하겠습니다. AIDS豫防法の 目的에 感染者의 基本的 權利가 보호되도록 포함시켰습니다.

둘째 AIDS 예방백신과 治療藥의 開發 및 豫防에 필요한 弘報活動을 強化하도록 國家·地方自治團體에 義務 規定을 強化하였습니다.

셋째 駐韓·美軍內 感染者問題를 協議하는 機構로서 韓美行政協定에 의한 合同委員會에 保健衛生分科를 新設하여 그간 保健社會部와 駐韓美軍當局間의 非公式의인 業務協助를 公式 機構로 制度化함으로써 第1次 感染經路인 駐韓美軍에 대해 效果의으로 保護·管理하도록 하였습니다.

네째 檢診에 관한 行政機關의 任意規定을 義務規定으로 하였습니다.

다섯째 海外에서 入國하는 內·外國人에 대한 後天性免疫缺乏症義務檢診條項을 新設하여 第1次 感染經路를 遮斷하였습니다.

여섯째 臟器·組織·精液 기타 感染危險이 있는 媒介體에 대해서도 人間免疫缺乏「바이러스」 感染與否 義務檢査 規定을 新設하여 國內에서도 擴散되고 있는 臟器·組織移植과 精液提供을 통한 人工受精으로 感染者가 發生하지 않도록 豫防措置하였습니다.

일곱째 感染者의 隔離保護 및 保護解除措置를 審議하는 保護審査委員會를 新設하여 感染者의 判定를 신중하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여덟째 疫學調査 對象者를 특정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인정 되므로 不特定人을 대상으로 할 處罰은 罪刑法定主義에 違背되므로 削除시켰습니다.

結論의으로 말씀드리면 이 AIDS는 不治病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豫防이 가장 중요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豫防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는 1次 感染者 차단 즉 美軍과 長短期 國內外旅行 外國人 國內入國者 또는 內國人으로서 外國에 長期滯留한 者에 대한 抗體檢査를 義務化하지를 않고 있는 점과 그리고 脆弱地區 또는 集團의 疫學調査하고 管理하는 규정이 약하고 그리고 弘報教育 義務化가 그렇게 철저하게 規定되어 있지 않은 것을 감안할 때 이번에 이 豫防

法中改正案은 필히 改正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여기에 있어서는 保社部單獨的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外務部和 國防部와도 상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일이 있어서 지난번 國政監査때에 保社部長官에게서 우리와 약속을 얻었던 것은 今年末이 다 가기 전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1月중에 他部處와 協議를 거쳐서 어떠한 措置를 내려 주시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 通報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國民의 保健衛生을 優先課題로 담고 있는 保社部에서는 처음에 이 法案을 만들 때에 이미 그런 義務規定을 포함했던 것으로 미루어서 아직도 保社部에는 意思가 충분히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마는 國防部和 外務部가 아직 어떠한 措置를 내리고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國民 主體性 그리고 政策의 優先順位를 감안할 때 이 部處들도 國民의 保健을 위해서 이러한 규정은 이번 改正案에 포함시켜 주셔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抗體檢査의 義務條項을 제외시켰던 이유는 다른나라에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었습니다마는 專門委員께서 例示해 준 바도 있습니다마는 長期滯留 永久滯留를 위해서는 中國 美國 「필리핀」 일부獨逸에서는 이미 규제를 하고 있고 3個月이상인 경우도 蘇聯 「쿠바」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入國者가 5日內에 抗體檢査를 의무적으로 받게 하고 있는 나라는 「이라크」이고 그리고 自國人으로서 外國에 체재한 모든 사람들의 抗體檢査를 의무화하고 있는 나라도 「시리아」 蘇聯 「쿠바」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特定 脆弱集團 娼女 藥物使用者 등에 대해서는 「오스트리아」 일부獨逸 「과테말라」 韓國 등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번에 이 AIDS豫防法中改正案을 原案대로 委員들께서 通過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參 照)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중개정법률안발의  
제안설명서

1988. 12

국 회 의 원 박 영 숙

위원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중개정법률안의 발의 의원으로서 그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현대의 흑사병이라 할 수 있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즉, AIDS공포에 떨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AIDS의 예방과 퇴치를 위한 세계각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세계보건기구(WHO)에 보고된 환자 수는 142개국에서 12만4천백14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AIDS바이러스 감염자는 5백만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1981년 최초의 공식적인 보고 이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5년후인 1993년에는 환자가 백만으로 감염자는 5백만을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5년 12월 첫 감염자가 발견된 이후 현재까지 33명의 감염자가 확인되어 이중 환자 4명을 포함 6명이 사망하고 26명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감염자의 증가추세를 보면 86년 4명 87년 9명이었으며 금년에는 19명으로 급증하였습니다. 특히 11월 한달간 4명의 감염자가 잇따라 확인되었고 올림픽을 전후로 외국인들의 입국이 급증하였기 때문에 3개월여의 잠복기를 고려하면 내년 초부터는 더 많은 수의 AIDS감염자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AIDS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원인은 우선 이병에 걸리면 치료제가 없다는데 있습니다. 발병이 되면 1년내에 60% 3년 내에 75% 5년내에 90%가 사망하게 됩니다. 예방백신과 치료제가 향후 5년내지 10년 내에는 개발될 전망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예방만이 최선의 방법이며 모든 대책은 예방을 최우선 과제로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예방법은 많은 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AIDS의 1차 감염결로라고 할 수 있는 외국인과 해외에서 입국하는 내국인에 대한 검진 의무규정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감염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내국인이 해외에서 감염된 경우가 15명 국내거주 외국인에 의한 감염이 11명으로 이 두가지가 가장 커다란 감염경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의무검진이 실시되었다면 더 많은 감염자가 확인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AIDS 감염의 예방은 당연히 이 두 경로에 대한 철저한 조치에 집중되어야함에도 현행 AIDS 예방법이 이들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특수직종종사자와 감염자로 판정된 사람들의 격리조치에만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1987년 당시 보사부의 예방법안에는 외국인에 대한 검진의무조항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보다 심각한 선진국에서도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서울올림픽과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선진국의 조치를 뒤따라가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다른 행정부서의 요구를 받아들여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AIDS는 예방만이 최선의 대책입니다. 이미 심각한 상태로 발전한 외국의 경우 오히려 국외로부터의 1차감염보다는 내국인에 의한 2차감염이 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감염자 수가 적고 2차감염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우리나라의 경우 1차 감염경로의 차단은 무엇보다 필요한 것입니다.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로 되어버린 시점의 예방은 사후약방문에 불과합니다. 1차 감염예방대책의 시행시기가 늦어질수록 AIDS대책에 더 많은 시간과 경비와 제반 문제가 뒤따르게 됩니다.

관광산업의 측면에서 보면 AIDS 예방정책이 항상 부정적인 효과만을 준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내의 향락산업과 관련한 이른바 매춘관광등의 저속한 관광산업에 제동을 걸 수 있다면 오히려 국민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일입니다. 또한 건전한 관광을 목적으로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AIDS의 심각성에 전주어 볼 때 결코 번거롭기만 한 절차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선진국에서 이른바 제3세계병이라고 했던 콜레라 장티푸스등에 대해 엄격히 대처했던 예에 비취볼 때 제1세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질병에 대해 예방책을 강구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물론 내국인에 의한 2차 감염자가 현재까지는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앞으로 1차 감염에 의한 국내감염자수가 늘어남에따라 그 수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에대한 대책 또한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동시에 입국자에 대한 예방조치는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주요한 사항입니다. 특히 외국인에 의한 감염자중 미군상대의 매춘여성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기때문에 정부와 미군 당국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미군에 의한 감염예방의 대책이 상시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한 미군내 감염자문제를 협의하는 기구로서 한미행정협정에 의한 합동위원회에 보건위생분과를 신설 그간 보건사회부와 주한미군당국간의 비공식적인 업무협조가 공식 기구를 통해 이루어 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행법에서는 감염자 및 감염이 우려되는자에 대한 인권보호 규정이 매우 미흡합니다. 감염자로 판정되면 강제 격리 수용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 판정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한 절차가 필요하며 감염자의 불이익을 막기위한 보호심사위원회의 설치가 법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AIDS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역학조사는 법률상 명확히 규정되지 않는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조치이기때문에 죄형법정주의 정신에 위배되므로 그 벌칙조항이 삭제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밖에 AIDS 바이러스를 매개할 수 있는 혈액뿐 아니라 장기 조직 정액 기타 매개체에 대해서도 감염여부를 검사하도록하여 의학의 발전에 수반한 장기조직의 이식과 인공수정등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의 윤리적 책임에만 돌리기에는 너무나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기때문에 그 예방에 있어서 정부와 노력과 법제도상의 보완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깊이 통찰하셔서 아무쪼록 원안의 취지대로 개정안을 심의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